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다수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 500만원 및 30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8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21.3.4.)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9조, 별표 제2호 개별기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법적 근거를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일괄 상향 조정 하되,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에 실효성을 제고함.

<과태료 부과금액의 설정범위>

위반행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을 차등 적용)
법 제38조제1항 (진술자 불이익)	1천만원 이하	(1차)500만원, (2차)750만원, (3차)1천만원
법 제38조제2항 (자료제출기피 등)	500만원 이하	(1차)250만원, (2차)375만원, (3차)500만원
법 제38조제3항 (출입통제 불응 등)	300만원 이하	(1차)150만원, (2차)225만원, (3차)300만원

*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이 통상 절반씩 줄어드는(예: 1천만원-5백만원-3백만원)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차수를 두는 경우에는 1차 부과금액)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상한액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21.3.4)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차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1호 일반기준)

- 1) 행정제재 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최근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중처분 대상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개정안 문구로 변경하여 위반횟수 산정 의미를 명확히 함.
- 2)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처분차수를 정해 위반행위 당시 예상치 못한 사유로 가중처분 되지 않도록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의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하여 법 집행상의 혼

선을 방지함. 단, 가중처분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더 높은 차수를 적용함.

- 3) 가중처분 적용기간 이전의 행위를 누적차수에 포함할 경우 위반
행위가 장기간 누적·가중되어 과도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어 적
발된 날부터 5년 이전의 처분은 누적차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전단 중 “과태료”를 “과태료의 가중된”으로, “1년간”을 “5년간”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를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위반행위로”를 “위반행위를 하여”로,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부터 5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경우	법 제38조제1항	500	750	1000
나.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1호	250	375	500
다. 법 제19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제2호	250	375	500
라. 법 제19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항공·철도사고등과 관련이 있는 관계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제3항제1호	150	225	300
마. 법 제19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관계물건의 제출 및 유치를 기피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법 제38조제3항제2호	150	225	300
바. 법 제19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출입통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38조제3항제3호	150	225	3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u>제38조제1항</u>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u>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연 락 처	(044) 201-5449